#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김영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166

발의연월일: 2021. 3. 26.

발 의 자:김영식·정운천·임이자

김형동・박 진・김용판

김기현 · 서병수 · 성일종

조승래 의원(10인)

### 제안이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성과평가법"이라 함)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 사업의 추진 및 예산의 조정에 반영하고, 창출된 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함으로써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이에따라 연구성과평가법은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활용에 대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의 성과를 제고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추격형 연구개발체계에서 창의·선도형 연구개발체계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연구성과가 복잡·다양해지고 있어 연구개발 성과평가체계도 변화된 환경에 맞게 연구성과의 다양성, 연구개발의 전략

성, 평가의 자율성과 전문성 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한편 최근의 감염병, 재난·안전, 환경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연구성과 창출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와 요구도 그 어느 때보다높은 상황임. 이에 따라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닌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성과관리'의 일환으로 평가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성과평가전반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 법·제도의 변화가 불가피함.

아울러 다양한 분야에서 비대면, 디지털 경제로 급격한 전환이 일어나면서 4차 산업혁명의 특성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공개와 공유, 연계와 협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연구개발 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따라 성과관리・활용 체계에서도 '시장·사회의 수요-기획-성과창출-평가-성과관리・활용-시장·사회로 확산'이 선순환 되는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며 성과관리・활용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됨.

따라서 연구개발 추진 기획 시 국가 차원의 전략성을 제고하면서, 수행과 관리에 있어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평가결과 및 성과정보의 공개와 인프라 확대를 통해 연구현장의 성과창출 역량을 강화하며, 연구성과 관리・활용 체계 강화를 통해 다양한 연구성과의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연구성과평가법의 체계화를 위한 장체제 신설(제5장 체제로 분장)

- 나. 연구성과평가법의 제정 목적을 연구개발사업 등의 평가와 평가를 통한 환류체계의 구축을 통하여 연구개발 투자의 효과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설정
  - 1) 연구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성과평가의 주요 기능 중에 하나인 성과 환류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1조).
  - 2) 연구개발 투자를 효율성 관점에서 탈피하여 효과성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창의·선도형 연구개발체제의 전환을 천명하고, 효과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효율성을 효과성으로 대체함(안 제1조 및 제3조).

#### 다. 정의조항의 신설 등

- 1) 성과평가의 본질이 축소되어 성과목표·지표의 설정 및 이의 달성에 집중하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성과평가에 대한 정의 규정을 삭제하고, 성과평가의 자체평가 중심주의로 재편을 위하여 자체평가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제6호).
- 2) 평가의 전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정평가의 정의규정에 목적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7호).
- 라.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의 원칙 구체화 및 정보의 공개와 활용 강화 원칙 신설 등
  - 1)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환경변화 반영 및 연구성과를 확산하고 기술의 이전 및 실용화 촉진 의무를 부과함(안 제3조제6항·제8항).
  - 2) 정보의 공개와 활용 강화에 대한 기본원칙을 신설함(안 제3조제9항).

- 마. 국가연구개발 목표 및 기획에 기반한 연구개발사업 등의 평가체계 구축
  - 1) 소관부처가 사업추진 시 사업별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하여 평가 및 관리하는 체제로 전환함(안 제6조).
  - 2) 연구개발사업 자체평가 관련 기관평가와의 조항 분리 및 자체평가 절차 관련 규정 및 과학기술부장관의 부처 자체평가에 대한 실시계획 준수 여부 점검절차를 신설함(안 제7조).
  - 3) 특정평가와 상위평가의 분리 및 특정평가의 사유로서 자체평가 점 검결과 심층적인 평가가 필요한 사업을 추가하고, 특정평가를 실시하 는 데 있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신설함(안 제 8조).
  - 4)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계획의 수립 절차 신설 및 상위평가는 「과학기술기본법」 및 「과기분야 정출연법」상 규정의 불비문제 해소를 위하여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10조 및 제11조).
- 바. 연구성과평가법상 과제평가에 대한 표준지침 제공에 대한 근거 구체 화하여 신설(안 제13조)
- 사.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태조사 내실화 및 연구개발사업의 종료 시연구개개발사업의 성과에 대한 효과성 분석 등 절차 신설
  - 1)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연감 발간에 대한 근거를 신설함(안 제18조제2항).
  - 2) 추적평가를 연구개발사업 효과성 분석으로 대체하고, 국가연구개발

혁신법상 추적조사의 기한을 기준으로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도 기간을 5년으로 함(안 제19조).

- 아. 연구개발 수행기관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요 사업에 대한 심층적인 성과관리체계 강화
  - 1) 성과평가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성과평가정보시스템을 통해 평가정보를 공개하여 연구개발성과평가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함(안 제22조).
  - 2) 연구성과 관리 · 유통 전담기관의 지정근거를 신설함(안 제25조).
  - 3) 성과평가 결과의 환류 및 성과관리 강화를 위하여 성과평가·관리 담당관 제도를 신설함(안 제26조).
  - 4) 성과평가 결과 등에 대한 보상 관련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29조).

법률 제 호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환류하며 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함으로써 연구개발투자의 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연구개발사업"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 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과학기 술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 2. "연구개발과제"라 함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소관 중

- 앙행정기관의 장이 선정한 과제를 말한다.
- 3. "연구기관"이라 함은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3항의 적용대 상인 정부출연연구기관등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 구기관을 말한다.
- 4. "성과목표"라 함은 연구개발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말한다.
- 5. "성과지표"라 함은 성과목표의 달성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말한다.
- 6. "자체평가"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연구회가 소관 연구개발사업,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7. "특정평가"라 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성과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심층적인 성과평가를 말한다.
- 8. "연구성과"라 함은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창출되는 특허·논문 •표준 등 과학기술적 성과와 그 밖에 유·무형의 경제·사회·문 화적 성과를 말한다.
- 제3조(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의 기본원칙) ① 정부는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평가를 성과 중심으로 실시하여 연구기관·대학 및 기업 등에 대한 연구개발투자의 효과성과 책임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성과평가를 실시할 때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창

- 의성을 존중하고 연구개발사업·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기관(이하 "연구개발사업등"이라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성과평가를 실시할 때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 ④ 정부는 성과평가를 실시할 때 연구개발사업등에 대한 평가를 상호 연계하는 등 평가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정부는 성과평가를 실시할 때 질적 성과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연구개발사업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⑥ 정부는 성과평가를 실시할 때 연구개발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국내외 특허동향, 기술동향 및 표준화 동향을 조사하여 그 반영 여 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 ⑦ 정부는 성과평가의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 사업의 추진 및 예산의 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⑧ 정부는 연구성과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성과를 확산하고 기술이전 및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⑨ 정부는 성과평가의 과정과 결과, 연구성과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관 정책, 사업, 업무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등) ① 이 법은 연구개발사업등의 평가와 연구성과의 관리·활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 ② 연구성과의 관리・활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

고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다른 법률에서 연구개발사업등의 평가와 연구성과의 관리・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한다.

#### 제2장 연구개발사업 등의 평가

- 제5조(성과평가계획의 마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등에 관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구개발 성과평가기본계획(이하 "성과평가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한다.
  - 1. 연구개발 성과평가의 기본방향
  - 2. 성과평가의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3.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 4. 성과평가 결과의 활용 및 공개에 관한 사항
  - 5. 성과평가 기법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6. 성과평가 전문가의 육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성과평가기본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성과평가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평가대상 및 일정을 포함한 연구개발 성과평가실시계획(이하 "성과

평가실시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성과평가기본계획 및 성과평가실시계획을 공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설립된 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에 알려주어야 한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성과평가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 전략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연구개발사업의 목표, 연차별·단계별 성과 목표 및 지표 등을 포함한 사업 전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사업 전략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1. 연구개발사업 개요
  - 2. 연구개발사업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전략목표
  - 3.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차별 · 단계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 4. 연구개발사업 평가계획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사업 전략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의 사업 전략계획의 수립 및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평

가실시계획에 따라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중간 성과에 대하여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평가를 실시하기 전 매년 당해 연도 성과평가실시계획에 따라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자체평가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자체평가의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연구개발사업의 자체평가가 제6조제1항의 사업 전략계획 및 제7조제2항의 자체평가실시계획 등에 따라 실시되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다.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한 기관, 단체 또는 기업의 장은 현장방문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체평가의 실시, 제4항의 자체평가 점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특정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한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특정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1. 장기간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 2. 사업간 중복조정 또는 연계가 필요한 사업
- 3.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 4. 국가적·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된 사업
- 5. 제7조제4항에 따른 점검 결과 심층적인 평가가 필요한 사업
-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특정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평가의 방향·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특정평가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 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평가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정평가의 결과에 대하여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⑥ 특정평가의 실시와 그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연구기관 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제5

조제2항의 성과평가실시계획에 따라 소관 연구기관에 대하여 전략 목표, 성과목표 및 지표 등을 포함한 기관운영계획 및 연구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제1항에 따른 기관운영 및 연구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수립된 기관운영 및 연구사업에 대한 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연구기관에 대한 자체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기관운영 및 연구사업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자체평가를 실시하기 전 매년 당해 연도 성과평가실시계획에 따라 소관 연구기관의 자체평가실시 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자체평가의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연구기관에 대한 상위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가 제10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연구기관

자체평가의 결과에 대하여 절차 및 방법의 객관성·공정성 등에 관한 평가(이하 "상위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상위평가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 및 연구회에 알려주어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상위평가의 결과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상위평가의 실시와 그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표준성과지표의 제공)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가 제6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성과지표 설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초연구·응용연구·개발연구등 연구개발 유형과 기술분야별 특성이 반영된 표준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는 연구개발사업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표준 성과지표의 개발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 참여하는 성과지표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성과지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표준 성과지표에는 질적 성과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 제13조(과제평가 표준지침의 제공)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 구개발과제의 특성을 반영한 성과평가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성과평가 표준지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성과평가 표준지침 이행실태에 관한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4조(다른 평가와의 관계) 연구기관에 대하여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기본법」제32조 제3항 및「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평가와 통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제15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조 및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평가의 결과를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산의 조정 및 배분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자체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개발사업 등의 추진계획을 수정·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제7조 및 제8조, 제10조 및 제11

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평가의 결과를 연구자에 대한 처우 및 연구환경 개선의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연구기관 등에 권고할 수 있다.

#### 제3장 연구성과의 관리・활용 등

- 제16조(연구성과 관리·활용계획의 마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구성과의 관리·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성과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한다.
  - 1. 연구성과 관리 활용의 기본방향
  - 2. 특허, 논문, 표준 등 연구성과 유형별 관리·활용 방법에 관한 사항
  - 3. 연구성과 데이터베이스의 종합적 관리에 관한 사항
  - 4. 연구성과 관리 활용 관련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성과관리기본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성과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구 성과의 관리·활용에 관한 세부적인 대상·방법 및 일정을 포함한 실시계획(이하"성과관리실시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성과관리기본계획 및 성과관리실시계획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

- 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성과관리기본계획 및 성과관리실시계획을 공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에 알려주어야 한다.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관리기본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성과관리실시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⑦ 제5항에 따른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 제17조(대학 등의 연구성과 관리·활용계획 마련) ① 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은 연구성과의 관리·활용계획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이전 및 사업화(연구성과를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의 향상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른 특정평가 시 제1 항에 따른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연구성과의 관리·활용계획의 마

런 여부와 추진실적 등을 평가항목에 포함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연구성과의 관리・활용계획을 마련하여야 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범위 및 마련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연구성과 관리·활용 실태조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은 연구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연구성과 활용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성과관리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추진 성과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연감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성과 활용 실태조사 및 제2항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연감을 작성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의 대표, 교육기관·연구기관의 장,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19조(연구개발사업 효과성 분석)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사업이 종료된 때에 연구개발사업의 성과에 대한 관리·활용 계획 을 수립해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이 종료된 이후 5년 이내에 제6조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의 추진과정, 제1항에 따른 관리·활용

계획의 결과, 연구개발사업의 성과에 대한 과학적·기술적·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 등의 분석(효과성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성과의 활용실적이 없거나 미흡한 사업에 대한 분석을 포 함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 관리·활용 계획과 효과성 분석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 관리·활용 계획 수립과 효과성 분석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연구성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 구회는 소관 연구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소관 연구성과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1조(기술가치평가 비용 등의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연구성과를 사업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성과에 대한 기술가치평가의 실시비용 및 특허 관련 비용 등을 관련 사업 비에 반영하고, 표준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표

준 관련 비용을 사업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4장 성과평가 및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반의 구축

- 제22조(성과평가정보의 공개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성과평가 제도의 운영 및 성과평가정보 공개를 위하여 성과평가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제6조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 제7조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 및 자체평가 점검 결과, 제8조에 따른 특정평가 결과, 제9조에 따른 연구기관 계획, 제10조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 제11조에 따른 상위평가 결과 등 성과평가정보를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성과평가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매년 성과평가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④ 성과평가정보의 등록 및 공개의 기준과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과학기술 혁신역량 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 발사업등의 성과창출을 높이고 국가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과 학기술통계와 지표에 대한 조사·분석과 연계하여 국가의 과학기술 혁신역량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평

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보고서를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관련 정책의 추진에 반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24조(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지원)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연구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소관 연구개발사업등에 대한 성과평가 및 연구성과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연구관리전문기관은 전문성·객관성·공정성을 갖춘 성과평가 및 연구성과의 관리·활용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관리전문기관이 제2항에 따라 성과평가 및 연구성과의 관리·활용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25조(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 신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활용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 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조사·연구능력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함)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 2.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3. 제1항에 따라 지정 받은 전담기관의 업무실적 등이 현저히 부실 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담기관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 ④ 전담기관의 업무, 지정요건 및 절차와 전담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6조(성과평가·관리 담당관의 지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 평가 실시, 성과평가 결과의 환류, 연구성과 관리·활용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를 성과평가·관리 담당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성과평가·관리 담당관의 임무 및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7조(교육훈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평가의 역량 향상과 연

구성과의 효율적인 관리·활용을 위하여 성과평가의 전문가·담당자 및 연구성과의 관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마련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지침의 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8조(평가예산의 확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소관 연구개 발사업 등에 대한 성과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규모의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29조(성과평가 결과 등에 대한 보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연구회는 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성과 창출에 기여한 자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포상 등 적절한 보상을 하여야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성과 관리・활용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포상하여야 한다.

### 제5장 보칙

제30조(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등에 대한 제출의무)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특정평가 및 연구

기관 자체평가에 대한 상위평가의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